#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66

발의연월일: 2024. 10. 30.

발 의 자:최보윤·최은석・박성민

이만희 · 김소희 · 김선교

김은혜·최수진·김선민

주진우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1년부터 「국가재정법」에서 예산 및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성인 지 예·결산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이에 맞춰 성인지 결산제도를 도입 하였음.

한편, 그동안의 장애 관련 예산과 정책은 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었으며, 우리 사회에 장애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지 못했고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장벽을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 는 등 주류 사회 내에 장애인을 포용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은 미흡한 실정임.

또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등이 10년 넘게 제도화되면서 성 주류화가 우리 사회에 안착된 반면, 장애주류화는 장애인단체 등에서 오랫동안 이러한 부분을 논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 개정으로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장애 인지 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안」(의안번호 제2200657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50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 및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 지"를 "같은 항 제7호의3에 따른 장애인지 결산서,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 및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 결산서 및 같은 항 제2호의3에 따른 장애인지"로 한다.

7의3. 장애인지 결산서

2의3. 장애인지 기금결산서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지 결산서 및 장애인지 기금결산서의 첨부에 관한 적용 례)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7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 류)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 | 류) ① ------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 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 7의2. (생 략) 1. ~ 7의2. (현행과 같음) <u><신</u>설> 7의3. 장애인지 결산서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야 하다. 1. ~ 2의2. (생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3. 장애인지 기금결산서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 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 -같은 항 제7호의3에 따른 장 금결산서 및 같은 항 제2호의2 애인지 결산서. 제2항제2호에 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 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 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감축인지 기금결산서 및 같은 하다. 항 제2호의3에 따른 장애인지-

<u>.</u>